



Korean Tax Newsletter

2024년 9월

CONTENTS

세법개정

- 기획재정부, 소득세법 시행령 등 5개 시행령 개정

예규판례

○ 법원

- 확정판결에 따라 지출한 손해배상금을 법인세법 제19조의 손금요건 중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손금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

○ 조세심판원

- 처분청의 경정에 따라 위약금등의 손금귀속시기가 변경된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종전 사업연도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 균등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주식이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합병포합주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적격합병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이 건 현물출자가 상증세법 제 45 조의 5 제 1 항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지주회사 설립 과정에서 발생한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을 재원으로 하여 지급한 배당금이 배당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

○ 기획재정부

- 당초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를 감액하고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 손금산입 방법

○ 행정안전부

- 법인의 기타 주주들이 유상감자를 함에 따라 기존 주주가 지분율 상승으로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 국세청

- 물적분할에 따라 양도한 영업권 미상각잔액의 손금 귀속시기
- 중간 참여 형식으로 가입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의 손금 여부
- 통합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액 계산 시 '직전 3년 연평균 투자금액'에 공사부담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세법개정

기획재정부, 소득세법 시행령 등 5개 시행령 개정

기획재정부는 금년도 각종 대책에서 기 발표한 내용 등과 관련한 후속조치로 소득세법 시행령 등 5개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24.9.12. ~ 10.22.),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24년 11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4.9.1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보도자료\(Link\)](#)

■ 소득세법 시행령

-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소득령 §155의 3)
<내용>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기한 2년 연장('26.12월)
<필요성> 전월세 시장 안정 지원

■ 법인세법 시행령

-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자에게 토지 양도시 추가과세 제외(법인령 §92조의 2④)
<내용> 법인이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자에게 토지 양도시 양도차익 법인세 추가과세(10%) 제외 적용기한 3년 연장('27.12월)
<필요성>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지원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확대(조특령 §2)
<내용> 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매출액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해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 3년 → 5년으로 확대(코스피·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은 7년)
<필요성> '24년에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한 기업에도 유예기간 연장 혜택을 적용하기 위해 금년 중 개정 필요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설·추석에 회사가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재화 부가가치세 비과세 적용(부가령 §19의 2)
<내용> 설·추석에 회사가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기타 복리후생비와 별도로 부가가치세 비과세 적용(최대 10만원)
<필요성>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복리후생 활동 지원, 추석 계기 선물 재화에 대한 소비 진작(금년 추석부터 적용)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 소형 신축주택(非아파트) 중부세 중과 주택수 제외 특례 적용기한 연장(중부령 §4의 3)
<내용> 소형 소형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중부세가 중과되는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기간을 2년 연장('27.12월)
<필요성> 공급이 위축되고 있는 non-아파트에 대한 세제지원

예규판례

[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지출한 손해배상금을 법인세법 제 19 조의 손금요건 중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손금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대법원 2024.9.12. 선고 2021 두 35308 판결, 파기환송)

■ 쟁점

확정판결에 따라 지출한 손해배상금을 법인세법 제19조의 손금요건 중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손금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사안

금융지주회사로서 은행의 모법인인 원고는, 은행이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하여 그 확정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이 사건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뒤 이를 손금에 산입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이 사건 손해배상금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부과하자, 원고가 법인세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판결요지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관련 민사사건의 확정판결에 따라 소외 2 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으로서, 그 지출 자체가 사회질서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고, 액수 또한 실손해의 범위를 벗어나는 과도한 금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소외 1 회사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소외 1 회사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손해배상금을 지출하였을 것으로 보임

원심이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 두 51310 판결은, 동종 업체들에게 입찰 포기의 대가로 지급한 담합사례금은 그 지출 자체가 사회질서에 위반한다고 보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서, 이 사건과 사안이 다름. 어떠한 비용을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규정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의 문제임. 구 법인세법은 제 19 조에서 손금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는 한편, 이와 별도로 제 19 조의 2 내지 제 38 조 등의 특례규정에서 손금불산입 항목과 손금산입 항목을 열거하고 있는데, 손해배상금은 손금불산입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손해배상금이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서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관련성, 통상성 및 수익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음.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손금의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어,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음

[조세심판원] 처분청의 경정에 따라 위약금등의 손금귀속시기가 변경된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종전 사업연도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조심 2024 인 0177, 2024.7.17., 취소)

■ 쟁점

처분청의 경정에 따라 위약금등의 손금귀속시기가 변경된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종전 사업연도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 사안

청구법인은 2015.4.6. 사단법인 000(이하 “양 c”)로부터 주식회사 a(이하 “a”) 주식(이하 “쟁점주식”)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5.6.18. 계약해제 통보를 받았음. 청구법인은 2018.11.26. 양 c 의 계약해제 통보는 당초 계약위반이고, 청구법인이 양 c 에게 계약금으로 지급한 000 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9.10.11. 최종패소하였음.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회수하지 못한 계약금 및 부대비용 합계 000 원(이하 “쟁점위약금등”)을 202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대손금으로 계상하고 손금에 산입하였음

인천지방국세청장은 2023.5.31.부터 2023.8.12.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위약금등은 2015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한다고 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3.9.8. 청구법인에게 2021 사업연도 법인세 000 원을 경정 고지하였음. 청구법인은 2023.10.18. 처분청이 쟁점위약금등의 귀속시기를 달리하여 법인세를 경정하였으므로, 이는 2015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000 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손금귀속시기를 임의로 조정하였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23.11.23. 이를 거부하였음.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

결정요지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고(대법원 2011.7.28. 선고 2009 두 22379 판결, 같은 뜻임), 「국세기본법」 제 45 조의 2 제 2 항 제 4 호는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로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로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를 규정하고 있음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위약금등의 손금 귀속시기를 잘못 적용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쟁점위약금등의 손금 귀속시기를 2021 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해당 손금의 귀속시기를 2015 사업연도로 보아 2021 사업연도분 법인세를 경정한 것인 점, 이에 따라 청구법인의 2015 사업연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발생하였고, 2015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을 쟁점위약금등만큼 초과하게 된 점,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분식결산 등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쟁점위약금등의 회계처리나 손금귀속시기를 조작하였다는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위약금등의 손금 귀속시기를 변경한 경정처분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균등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주식이 ‘합병등기일 전 2 년 이내에 취득한 합병포합주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적격합병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3 서 10049, 2024.7.29., 취소)

■ 쟁점

(합동) 청구법인이 관계회사의 균등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쟁점주식이 ‘합병대가를 금전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는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 년 이내에 취득한 합병포합주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법인과 관계회사간의 쟁점합병을 비적격합병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사안

청구법인은 모회사인 주식회사 a(이하 “a”)와 함께 관계회사인 주식회사 c(이하 “c”) 발행주식의 약 96.65%를 소유하고 있었음. c 는 2018.11.30.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기존 주주를 대상으로 균등유상증자를 결정하였고, 청구법인 및 a 는 이에 참여하여 각각 c 에 대해 보유하고 있던 채권 등을 증자대금과 상계(이하 “쟁점유상증자”)하는 조건으로 청구법인은 신주 28,107,868 주(이하 “쟁점주식”)를, a 는 신주 20,217,094 주를 각각 교부받았으며, 그 외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은 주주를 제외한) 기타주주는 증자대금을 현금으로 납입하여 1,074,540 주를 교부받았음. 한편, c 의 실적부진이 계속되자 청구법인과 a 는 c 의 합병을 결정하였고, 합병비율을 1:0.4896347 로 산정하여 청구법인을 합병존속법인으로 하는 합병(이하 “쟁점합병”)을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c 를 합병한 후 기존 c 의 주주에게 그 합병대가로 청구법인의 주식을 교부하였음

청구법인은 쟁점합병이 적격합병의 요건인 주식(지분)의 연속성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한 비적격합병에 해당 하는 것으로 보아 2019~2021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를 해오다가, 2022.11.3. 쟁점주식이 합병등기일 전 2 년 내에 취득한 합병포합주식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적격합병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 44 조의 3 에 따른 적격합병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처분청에 2019~2021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환급해 줄 것을 경정청구 하였음. 처분청은 2023.8.22. 쟁점주식이 금전으로 합병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는 합병등기일 전 2 년 내에 취득한 합병포합주식에 해당하여 청구법인이 「법인세법」 제 44 조 제 2 항 제 2 호의 적격합병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9.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

결정요지

이 건 쟁점합병의 경우,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을 보면, c 의 재무구조 개선 및 구조조정 필요성이 존재하여 유상증자를 결정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법인과 a 는 쟁점유상증자 전에 c 의 지분 96.65%를 보유하고 있었고, 유상증자 후에는 97.15%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쟁점합병 직전에는 기타주주의 나머지 지분을 모두 매입하여 100%의 지분을 보유한 상황에서 쟁점합병이 이루어져 실질적으로 지분 구성의 변화가 없었다고 할 수 있는 점, c 지분의 약 97%를 보유하고 있던 a 와 청구법인은 쟁점합병이 있기 약 1 년 전 c 의 경영상 위기로 인한 재무구조 개선 등을 위해 유상증자를 결정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구주 취득방식이 아닌 (균등)유상증자를 통해 신주를 취득하였으며, 이 경우 주식취득에 대한 대가는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아닌 피합병법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것으로서 합병 등으로 인한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 전에 합병법인에게 주식을 미리 매각하였다거나 합병법인(청구법인)이 합병대가(합병교부금)를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합병대가를 지급받은 상대방은 피합병법인이고, 피합병법인은 쟁점합병 후 청구법인에 흡수되므로 결론적으로 합병법인이 합병법인에게 합병대가를 미리 지급하였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모순이 발생한다)인 점, 청구법인의 쟁점합병에 대하여 적격합병에 따른 과세특례를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균등)유상증자로 취득한 쟁점주식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 80 조의 2 제 3 항의 금전으로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는 ‘합병포합주식’에 포섭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취득금액과 포합주식에 대한 합병대가의 간주교부주식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금전으로 지급한 합병교부금으로 계산하여 쟁점합병을 지분의 연속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적격합병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이 건 현물출자가 상증세법 제 45 조의 5 제 1 항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3 서 3235, 2024.8.13., 취소)

■ 쟁점

지주회사 전환 목적에서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들이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매수 방식으로 주식을 현물출자한 행위가, 상증세법상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안

청구인 a 와 청구인 b(이하 “청구인들”) 및 청구인들의 특수관계인들은 코스닥상장법인 주식회사 c 의 대주주이고, 주식회사 c 는 2020.5.1. 주식회사 c(이하 “쟁점법인”)와 분할신설법인인 주식회사 d(이하 “d”)로 인적 분할되었음. 쟁점법인은 2021.4.22.부터 2021.5.12.까지 공정거래법 상 지주회사 요건 충족을 목적으로 d 보통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이하 “자본시장법”) 공개매수 방식(이하 “공개매수”)으로 취득하였는데, 공개매수를 한 d 주주들에게 ‘현물출자 신주발행’ 방식으로 쟁점법인의 보통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였음

청구인들은 2021.5.17. d 의 최대주주인 청구인들의 특수관계인들이 공개매수 방식으로 d 주식을 현물출자한 행위(이하 “이 건 현물출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 45 조의 5 제 1 항(이하 “쟁점조항”)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2.6.30. 특정법인의 이익 중 이 건 현물출자에 참여한 특수관계인 e 와 주식회사 f 가 참여한 주식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들로부터 받은 증여이익으로 하여 증여세를 각 신고·납부하였음. 청구인들은 2022.7.28. 처분청에 이 건 현물출자는 쟁점조항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 의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3.1.20. 이를 거부하였음.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7. 각 심판청구를 제기함

결정요지

쟁점조항은 “지배주주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 분의 30 이상인 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 받거나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상증령 제 29 조의 3 제 1 항 각 호는 주권상장법인이 자본시장법상 일반공모증자 방식에 의하여 현물출자를 실시하여 발행한 신주를 증여이익 산정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이 건 현물출자를 달리 취급할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워 보이고, 일반적으로 현물출자가 자본시장법상 공개매수 및 일반공모증자방식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증여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 점, 이 건 현물출자가 자본시장법상 공개매수 및 일반공모증자방식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들간 다툼이 없고, 관련 법령에 의해 신주의 발행가액이 결정된 것인 점, ‘통상적인 거래 관행’이란 납세의무자와 동일한 상황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다른 납세의무자가 그 상황에서 보편적으로 하는 거래행위를 의미하는 것인바, 내국법인들은 경영목적상 현물출자를 통한 지주회사 전환 등을 필요로 할 것인데, 쟁점법인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현물출자 대상 주식 및 신주발행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여 공개매수를 실시하고 청구인들의 특수관계인들이 d 주식을 현물출자 하여 쟁점법인의 신주를 취득한 것에 있어 그 통상성을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부의 세습 등 변칙적인 증여를 위하여 이 건 현물출자를 하였다거나 달리 조세회피의도를 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현물출자를 상증세법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지주회사 설립 과정에서 발생한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을 재원으로 하여 지급한 배당금이 배당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

(조심 2023 중 10020, 2024.9.4., 기각)

■ 쟁점

지주회사 설립 과정에서 발생한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을 재원으로 하여 지급한 배당금이 배당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

■ 사안

A.B.C.D(이하 "청구인들")은 주식회사 E(이하 "자회사")의 지분을 모두 보유하고 있던 주주들이고, 주식회사 F(이하 "모회사")는 2019.12.30. 청구인들로부터 자회사(주식회사 E)의 주식을 포괄적으로 이전받아 청구인들이 100% 지배하는 법인인데, 청구인들은 모회사(주식회사 F)에게 자회사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대가로 모회사 주식을 수령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 38 조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따른 과세특례' 규정에 근거하여 과세이연을 신청하였으며, 모회사는 취득한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을 '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하였음

모회사는 과세관청으로부터 주식의 포괄적인 이전차익인 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배당을 실시한 경우 이는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세법해석에 대한 사전답변을 받고, 자회사로부터 2020 년 000 원, 2021 년 000 원 합계 000 원을 배당받은 후 지주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며, 2020.12.31. 청구인들에게 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000 원의 현금배당(이하 "쟁점배당")을 결의하면서 위의 사전답변을 이유로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음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은 청구인들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배당에 대해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과세대상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2023.4.4. 청구인들에게 2021 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000 원을 각 경정(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5.12. 이의신청을 거쳐 2023.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

결정요지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조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경제적으로 하나의 거래임에도 형식적으로 중간 거래를 개입시켰다는 이유만으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함부로 부인할 수 없으나,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과세상 의미를 갖지 않는 그 가장행위를 제외하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대법원 2014.1.23. 선고 2013 두 17343 판결, 같은 뜻임).

많은 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가 주주들(청구인들)에게 직접 현금배당을 지급하는 대신 자회사 주식의 현물출자를 통해 모회사(지주회사)를 설립한 후 모회사에게 현금배당을 실시하고 모회사는 설립과정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으로 모회사 주주들(청구인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게 되면 지주회사 설립이라는 과정을 통해 결과적으로 자회사의 이익잉여금이 모회사의 자본잉여금으로 변환되게 되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모회사가 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모회사 주주들(청구인들)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비과세하게 된다면 모회사 설립 없이 기존회사에서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세부담 측면에서의 큰 불공정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저율의 법인세를 납부한 후 배당소득 등을 추가로 납부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와의 조세형평을 맞추고 있는 현재의 조세체계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할 것이며,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위, 모회사 설립의 목적과 그 사업내용(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경영컨설팅), 모회사 및 자회사의 주주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모회사의 설립은 쟁점배당에 대한 조세회피 목적 이외에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어 보이므로 쟁점배당의 실질재원은 자본잉여금이라기 보다는 사실상의 이익잉여금으로 봄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사전답변 신청 시 쟁점배당에 대해 조세회피 가능성과 관련한 주요한 사실관계(...)를 포함하게 된다면 이는 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제 18 조 제 7 호에 따른 조세의 회피 또는 탈루 목적의 신청에 해당하는 질의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사전답변의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기획재정부] 당초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를 감액하고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 손금산입 방법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61, 2024.8.14.)

■ 질의

당초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를 감액하고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 손금산입 방법

회신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개발비 요건을 모두 충족한 지출액을 재무제표에 개발비로 계상하였으나 이후 개발비를 감액하고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 감액한 개발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 31 조제 8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로서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 23 조제 1 항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해당 개발비가 최초 인식시점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개발비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안임

[행정안전부] 법인의 기타 주주들이 유상감자를 함에 따라 기존 주주가 지분을 상등으로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2606, 2024.7.30.)

■ 질의

법인의 기타 주주들이 유상감자를 하여 기존 주주 지분율이 증가됨에 따라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발생 여부

회신

(...) 대법원에서도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에 따라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증가되어 기존 주주가 과점주주로 된 사안에 대해, 기존 주주는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에 따라 그 지분비율이 증가하여 과점주주가 된 것일 뿐 기존 주주가 주식을 취득하는 어떠한 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 두 8669 판결)한 바 있음

기존 유권해석 사례에서도 법인의 기타 주주들이 무상감자를 함에 따라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이 증가되어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주식 등의 취득행위가 없으므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음(부동산세제과-2867, 2023.8.1.)

따라서 본 질의와 같이 법인의 기타 주주들이 유상감자를 함에 따라 기존 주주가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없이 지분율이 증가되어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주식등의 취득행위가 없으므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이 질의서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한 해석이므로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해당 자치단체에서 최종 판단해야 할 사항임

[국세청] 물적분할에 따라 양도한 영업권 미상각잔액의 손금 귀속시기

(서면-2022-법인-5581, 2024.4.8.)

■ 질의

분할법인이 물적분할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회계상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한 영업권 미상각 잔액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인지 또는 연도별 상각범위액 내에서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인지

- (갑설) 양도가액(익금)에 대응하는 원가로서 양도당시 장부가액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
- (을설) 연도별 상각범위액 내에서 감가상각비로 손금 처리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19.3.26. 합성수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플라스틱과 ###로부터 영업양수도 방식으로 해당 영업을 양수. **플라스틱과 ###의 순자산 가치를 108 억원, 영업권의 가치를 86 억원으로 평가하여 영업양수 대가로 합계 194 억원을 지급하고 영업권은 감가상각하여 비용을 인식
- '21.5.1. 양수한 사업부문을 주식회사 **과 주식회사 ###로 비적격 물적분할하였으며 분할 당시 영업권 미상각 잔액은 55 억원임. 분할부문 사업장 토지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지 않고 분할신설법인에게 임대
- 질의법인은 일반기업회계기준(동일지배거래)에 따라 영업권을 포함한 순자산 장부가액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고, 세무처리상 영업권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70, 2020.6.29.)에 따라 영업권을 제외한 순자산을 시가로 평가하여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주식감액 등 세무조정

회신

(갑설)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 24 조 제 1 항 제 2 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2 조 제 1 항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영업권을 감가상각 하던 중 해당사업의 물적분할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물적분할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영업권의 시가를 양도금액으로 익금에 산입하고, 동 영업권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국세청] 중간 참여 형식으로 가입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의 손금 여부

(사전-2024-법규법인-0452, 2024.8.6.)

■ 질의

내국법인이 중간 참여 형식으로 가입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

- A 법인은 2023.9 월 설립된 법인으로 설립 이후 현재까지 B 법인이 단독주주로 A 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음
- 완전모회사인 B 법인은 2019년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 중이며, A 법인은 2023.10 월 해당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중간 참여 형식으로 가입하고 2024.3 월 해당 기금에 출연하였음

회신

「근로복지기본법」 제 86 조의 7 에 따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중간 참여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국세청] 통합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액 계산 시 ‘직전 3년 연평균 투자금액’에 공사부담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서면-2023-법규법인-2757, 2024.3.19.)

■ 질의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추가공제 시, 해당 과세연도 투자금액에서 차감하는 ‘직전 3년 연평균 투자금액’에 공사부담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열·전기를 공급하는 집단에너지사업자로,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투자금액」에 대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 18 조에 따라 열·전기 에너지의 사용자로부터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건설비용 일부(공사부담금)’를 받아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투자에 지출하였음

회신

2022 과세연도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 24 조 제 1 항 제 2 호 나목 및 제 3 호 나목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 37 조 제 1 항에 따른 공사부담금을 제공받아 투자에 지출한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 127 조 제 1 항 제 4 호에 따라 투자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Contacts

상기 내용에 관해 궁금하신 사항을 아래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권지원 Tax & Legal Leader

+82 (2) 6676-2416

jekwon@deloitte.com

김경조 Partner

+82 (2) 6099-4279

kyungjokim@deloitte.com

정호석 회계사

+82 (2) 6099-4734

hosjung@deloitte.com

※ 본 뉴스레터에 게재된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공식적인 견해나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개별적 사안에 대한 적용은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80 개 이상 국가의 세금 뉴스 및 정보를 보려면 지금 tax@hand 를 [방문](#)하거나 tax@hand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하세요”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하여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Back to top](#)